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8. 7. 30(월) / 총 1매(본문 1매)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 과장 황윤언, 사무관 허 온, 주무관 이상직 • ☎ (044) 201-3340, 3344
보 도 일 시		7. 30(월) 14시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령요건 확대 ·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은 만19세 이상에서 만29세 이하이나, 하반기 세법개정에 따라 청년범위가 만15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로 규정되는 경우 개정되는 세법에 부합되도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가능 연령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령 확대(안) :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 아울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되며, 개정될 조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소득유형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우대금리	비 과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	○	○
사업소득자	○	○	X
기타소득자	○	X	X

*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소득요건: 근로소득자(연 3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연 2천만원 이하)

**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범위: 이자소득 500만원(단,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인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허 온 사무관(☎ 044-201-33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